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11월 1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11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8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2008년 12월 12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총무과장 김영의)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2008. 5. 1.)에 따라 본청과 구청 간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대국·대과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대국·대과체제 구축을 위한 국 단위 기구를 통·폐합하고, 새로운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국 및 사업소를 신설하는 한편, 유사업무 기능의 과 단위 기구를 통·폐합 또는 신설함.(안 제5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0조의3·제10조의4·제11조 및 제16조, 별표 1)

<국 단위 기구 조정 : 7국 → 7국(변동 없음)>

- 총무국 + 주민생활지원국(일부) = 총무국
- 기획재정국(일부) + 경제문화국(일부) = 재정경제국
- 경제문화국(일부) + 주민생활지원국(일부) = 주민생활지원국
- 도시국(일부) → 뉴타운개발국

〈사업소 단위 기구 조정 : 1사업소 신설〉

- 공원관리사업소

〈과 단위 기구 조정: 63과 → 58과(감 5과)〉

- 본 청

(통·폐합) - 정책기획과(일부) + 예산법무과 = 기획예산과  
 - 교통행정과 + 교통시설과 = 교통관리과

(신 설) - 주택과, 공공디자인과, 공영개발과, 도시미관과

(폐 지) - 위생과

- 직속기관

(신 설) - 위생과

- 구 청

(통·폐합) - 원미구 건설과 + 원미구 도시정비과(일부) → 건설과

- 각 구청 경제교통과(일부) + 각 구청 환경위생과(일부)  
 = 환경녹지과

(폐 지) - 각 구청 건축과

### 3.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내용   | 답변 내용  |
|---|--|
| ○ 입법예고시 의견은 있었는가?                             | ○ 국명칭 변경, 보건소 직렬조정, 직렬 전환 등 내·외부로부터 총 13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6건은 반영하고 7건은 미반영하였음.(총무과장)<br>(내용은 회의록 참조) |
| ○ 주로 내부의견이 많은데 내부의견은 사전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 ○ 사전에 내부의견을 충분히 수렴함. 모든 의견을 다 반영할 수 없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 향후 조직 개편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임.<br>(총무과장)     |

| 질 의 내 용  | 답 변 내 용   |
|--|---|
| ○ 건축과의 경우 5분이 늦었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며, 내부 의견이므로 서류가 미흡하더라도 의견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봄.  | ○ 내용물이 없는 공문만 미리 보내고 다음날 결재서류를 보냈으나, 내부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된 사안임.(총무과장)                        |
| ○ 당초 조직개편 안에는 소사, 오정보건소장을 5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4급으로 전환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안은 있는가?  | ○ 행안부 지침상 인구 10만 이상 보건소는 4급으로 되어 있어 불가피한 사안이며, 앞으로 행안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여 5급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총무과장) |
| ○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통합됨에 따라 구청 위생민원 처리 시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데 대책이 있는지?  | ○ 민원불편이 예상되는 원미구는 증축에 따라 여유공간이 있으므로 구청에 위생관련 부서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총무과장)                        |
| ○ 문화를 산업화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시정목표로 볼 때 문화관련 부서를 주민생활지원국에 편입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 ○ 중앙정부 방침상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에 문화도 포함되어 있어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한 것임.(총무과장)                                  |
| ○ 교통관련 기획업무나 유비쿼터스 업무를 교통정보센터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하여 검토하겠음.(총무과장)   |
| ○ 도시미관과가 13개 팀이나 되는데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 구청에 두는 것이 맞지 않은가?  | ○ 그간 단속업무가 여러 기관·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에 문제가 있었음. 이를 보완하고자 단속업무를 통합하는 것임.(총무과장)                      |
| ○ 구청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을 집행하기도 바쁘다. 이로 인해 정산에 소홀한 점이 있으며, 동 주민센터도 동별로 민원업무량 편차가 많다. 앞으로 업무량을 분석하여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겠음.<br>(총무과장)   |

| 질 의 내 용   | 답 변 내 용   |
|---|---|
| <p>○ 지방의 행정여건이 그 지역별로 다르듯이 부천만의 행정환경이 있다. 중앙정부 지침에 의존한 조직개편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결정이라 판단되며, 이번 조직개편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듯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되고 있다고 봄.</p> | <p>○ 불합리한 부분은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음.<br/>(총무과장)</p>  |
| <p>○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44명이 줄어드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는가?</p>  | <p>○ 퇴직 등 자동감소 되는 기간 동안 별도 정원으로 인정됨. 현재 일부 결원이 있고 엑스포 파견 등으로 대체할 계획임.(총무과장)</p>                               |
| <p>○ 부천은 공무원 인사적체가 심각한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감축됨. 인사적체를 해소할 방안이 있는가?</p>   | <p>○ 지난해부터 우리 시도 보통교부세를 받는 자치단체가 되어 감축을 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등 패널티가 있음. 중앙정부 지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br/>(총무과장)</p> |
| <p>○ 경기도 타 시·군 조직개편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p>  | <p>○ 15개 시·군은 완료, 7개 시·군은 추가 감축 추진, 5개 시·군은 12월 중 처리예정에 있으며, 4개 시·군은 의회 보류 중에 있음.(총무과장)</p>                   |
| <p>○ 한 번의 조직개편으로 모든 것을 반영할 수는 없겠으나, 조직개편 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안이 시민편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므로 식품안전과 신설, 구청에 건축정보팀 증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조직개편 시 반영되어야 할 것임.</p>              | <p>○ 조직개편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음.(총무과장)</p>  |

## 4. 토론요지

### 가. 반대토론

- 지방의 행정여건이 그 지역별로 다르듯이 부천만의 행정환경이 있다. 중앙정부 지침에 의존한 조직개편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충분한 조직진단과 평가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 문화를 산업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시정목표로 볼 때 문화관련 부서를 주민생활지원국에 편입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번 조직개편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듯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나. 찬성토론

- 한 번의 조직개편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며, 이번 조직개편이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여 예산절감 통한 감량경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향후 조직개편 시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조”를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소: 시립도서관, 공원관리사업소, 교통정보센터

제3조의 제목 중 “직급등”을 “직급 등”으로 한다.

제5조 중 “기획재정국, 경제문화국”을 “재정경제국”으로 하고, 도시국 다음에 뉴타운개발국을 신설한다.

제7조제1항 중 “시민봉사과”를 “민원여권과, 체육청소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행정서비스”를 “행정서비스·혁신분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기반보호·민간협력·생활환경정비”를 “민간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민원행정”을 “민원행정·여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체육진흥, 체육시설, 청소년육성, 사회체육에 관한 사항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정경제국에 두는 과) ① 재정경제국에 기획예산과,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산지원과를 둔다.

② 재정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정책개발·법무·예산의 편성 및 집행·투자심사·경영사업·지방재정관리시스템운영·의회협력·심사분석·성과관리·통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전반에 관한 기획·시세운영·세외수입·수납관리·차량세무 및 체납관리(징수)에 관한 사항
3. 경리·계약·복식부기·재산관리·청사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경제·유통·노사협력·가스·에너지에 관한 사항
5. 기업지원·지식산업·산업정책·기술지원·공장설립·무역진흥에 관한 사항

6. 농업행정·축산유통·자연학습·도시원예에 관한 사항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체육청소년과, 위생과”를 “문화산업과, 문화예술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문화산업·만화산업·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제10조의3제1항 중 “뉴타운개발과, 도시균형개발과, 녹지공원과, 건축과, 시설공사과”를 “공원녹지과, 건축과, 주택과, 시설공사과, 공공디자인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행정·도시계획·입지지원·도시정비·지구단위 및 토지정보에 관한 사항
2. 도시녹화·공원조성·산림환경에 관한 사항
3. 일반 건축물 등의 건축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등의 건축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공용건축물 시설공사·공공건축물 신축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도시디자인·도시경관·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의 디자인·시범가로 조성에 관한 사항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뉴타운개발국에 두는 과) ① 뉴타운개발국에 뉴타운개발과, 도시균형개발과, 공영개발과를 둔다.

② 뉴타운개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뉴타운지구 및 신·구시가지 간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3.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체비지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과”를 “교통관리과”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다음에 “도시미관과”를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로안전·가로정비”를 “도로안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교통행정·운수·화물 등 물류행정 및 주차정책·주차시설에 관한 사항
- 7. 교통지도 및 단속·노점상·야시장·옥외광고물·가로정비 및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제16조의 제목“(관장 또는 센터장)”을“(소장·관장 또는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관장 또는 센터장”을 각각 “소장·관장 또는 센터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공원관리사업소
  - 가.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나. 근린공원·도시자연공원·체육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구에 두는 하부조직) 자치구가 아닌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1과(원미구에 한한다), 세무2과(원미구에 한한다), 세무과(소사·오정구에 한한다), 주민생활지원과, 환경녹지과, 건설과를 둔다.

별표 1의 부천시시립도서관 소재지란 중 “원미1동”을 “원미동”으로 하고, 같은 표의 기관명란 중 부천시시립도서관책마루분관란 다음에 부천시시립도서관한울빛분관란 및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원미구 원미1동 소재지란 중 “원미1동”을 “원미동”으로 한다.

| 기 관 명                       | 소 재 지                                     |
|-----------------------------|---|
| 부천시시립도서관한울빛분관<br>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337-1번지<br>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7번지 |

##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제342호                    |
| 의결<br>년월일 | 2008. 12. 22.<br>(제148회) |

제출년월일 : 2008. 11. 1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2008. 5. 1.)에 따라 본청과 구청 간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대국·대과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대국·대과체제 구축을 위한 국 단위 기구를 통·폐합하고, 새로운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국 및 사업소를 신설하는 한편, 유사업무 기능의 과 단위 기구를 통·폐합 또는 신설함.(안 제5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0조의3·제10조의4·제11조 및 제16조, 별표 1)

<국 단위 기구 조정: 7국 → 7국(변동 없음)>

- 총무국 + 주민생활지원국(일부) = 총무국
- 기획재정국(일부) + 경제문화국(일부) = 재정경제국
- 경제문화국(일부) + 주민생활지원국(일부) = 주민생활지원국
- 도시국(일부) → 뉴타운개발국

<사업소 단위 기구 조정: 1사업소 신설>

- 공원관리사업소

<과 단위 기구 조정: 63과 → 58과(감 5과)>

- 본 청

(통 · 폐합)

- 정책기획과(일부) + 예산법무과 = 기획예산과
- 교통행정과 + 교통시설과 = 교통관리과

(신 설)

- 주택과, 공공디자인과, 공영개발과, 도시미관과

(폐 지)

- 위생과

- 직속기관

(신 설)

- 위생과

- 구 청

(통 · 폐합)

- 원미구 건설과 + 원미구 도시정비과(일부) → 건설과
- 각 구청 경제교통과(일부) + 각 구청 환경위생과(일부) =  
환경녹지과

(폐 지)

- 각 구청 건축과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조”를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소: 시립도서관, 공원관리사업소, 교통정보센터

제3조의 제목 중 “직급등”을 “직급 등”으로 한다.

제5조 중 “기획재정국, 경제문화국”을 “재정경제국”으로 하고, 도시국 다음에 뉴타운개발국을 신설한다.

제7조제1항 중 “시민봉사과”를 “민원여권과, 체육청소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행정서비스”를 “행정서비스·혁신분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기반보호·민간협력·생활환경정비”를 “민간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민원행정”을 “민원행정·여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체육진흥, 체육시설, 청소년육성, 사회체육에 관한 사항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정경제국에 두는 과) ① 재정경제국에 기획예산과,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산지원과를 둔다.

② 재정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정책개발·법무·예산의 편성 및 집행·투자 심사·경영사업·지방재정관리시스템운영·의회협력·심사분석·성과관리·통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전반에 관한 기획·시세운영·세외수입·수납관리·차량세무 및 체납관리(징수)에 관한 사항
3. 경리·계약·복식부기·재산관리·청사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경제·유통·노사협력·가스·에너지에 관한 사항
5. 기업지원·지식산업·산업정책·기술지원·공장설립·무역진흥에 관한 사항

6. 농업행정·축산유통·자연학습·도시원예에 관한 사항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체육청소년과, 위생과”를 “문화산업과, 문화예술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문화산업·만화산업·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제10조의3제1항 중 “뉴타운개발과, 도시균형개발과, 녹지공원과, 건축과, 시설공사와”를 “공원녹지과, 건축과, 주택과, 시설공사와, 공공디자인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행정·도시계획·입지지원·도시정비·지구단위 및 토지정보에 관한 사항
2. 도시녹화·공원조성·산림환경에 관한 사항
3. 일반 건축물 등의 건축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등의 건축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공용건축물 시설공사·공공건축물 신축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도시디자인·도시경관·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의 디자인·시범가로 조성에 관한 사항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뉴타운개발국에 두는 과) ① 뉴타운개발국에 뉴타운개발과, 도시균형개발과, 공영개발과를 둔다.

② 뉴타운개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뉴타운지구 및 신·구시가지 간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3.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체비지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과”를 “교통관리과”로 하고, “재난 안전관리과” 다음에 “도시미관과”를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로

안전·가로정비”를 “도로안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통행정·운수·화물 등 물류행정 및 주차정책·주차시설에 관한 사항
7. 교통지도 및 단속·노점상·야시장·옥외광고물·가로정비 및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제16조의 제목“(관장 또는 센터장)”을“(소장·관장 또는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관장 또는 센터장”을 각각 “소장·관장 또는 센터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원관리사업소
  - 가.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나. 근린공원·도시자연공원·체육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구에 두는 하부조직) 자치구가 아닌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1과(원미구에 한한다), 세무2과(원미구에 한한다), 세무과(소사·오정구에 한한다), 주민생활지원과, 환경녹지과, 건설과를 둔다.

별표 1의 부천시시립도서관 소재지란 중 “원미1동”을 “원미동”으로 하고, 같은 표의 기관명란 중 부천시시립도서관책마루분관란 다음에 부천시시립도서관한울빛분관란 및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원미구 원미1동 소재지란 중 “원미1동”을 “원미동”으로 한다.

| 기 관 명         | 소 재 지                |
|---------------|----------------------|
| 부천시시립도서관한울빛분관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337-1번지 |
|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    |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7번지    |

##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현행   | 개정안   |
|--|---|
| <p>② (생략)</p> <p>1. 문서·복무·인사·조직관리·교육·국제교류·<u>행정서비스</u>·후생복지에 관한 사항</p> <p>2. 주민자치·시정시책·선거·여론관리·<u>지역기반보호</u>·<u>민간협력</u>·<u>생활환경정비</u>에 관한 사항</p> <p>3. (생략)</p> <p>4. <u>민원행정</u>·<u>생활민원</u>·<u>콜센터</u>추진에 관한 사항</p> <p><u>&lt;신설&gt;</u></p>  | <p>② (현행과 같음)</p> <p>1. -----<br/>-----<u>행정서비스</u>·<u>혁신</u><br/><u>분권</u>-----</p> <p>2. -----<br/>-----<u>민간협</u><br/><u>력</u>-----</p> <p>3. (현행과 같음)</p> <p>4. <u>민원행정</u>·<u>여권</u>-----<br/>-----</p> <p>5. <u>체육진흥</u>, <u>체육시설</u>, <u>청소년육</u><br/><u>성</u>, <u>사회체육</u>에 관한 사항</p>   |
| <p>제8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p> <p><u>기획재정국에 정책기획과, 예산</u><br/><u>법무과, 세정과, 회계과를 둔다.</u></p> <p>② <u>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u><br/><u>분장한다.</u></p> <p>1. <u>시 행정의 종합기획·정책개</u><br/><u>발·심사분석·성과관리·혁신</u><br/><u>분권·통계에 관한 사항</u></p> <p>2. <u>예산의 편성 및 집행·디지털</u><br/><u>재정·경영사업·법무·의회협</u><br/><u>력에 관한 사항</u></p> <p>3. <u>지방세 전반에 관한 기획·시</u><br/><u>세운영·세외수입·수납관리·</u><br/><u>법원민원·차량민원 및 체납관</u><br/><u>리(징수)에 관한 사항</u></p> <p>4. <u>경리·계약·복식부기·재산관리</u></p> | <p>제8조(재정경제국에 두는 과) ①</p> <p><u>재정경제국에 기획예산과, 세정</u><br/><u>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기업지</u><br/><u>원과, 농산지원과를 둔다.</u></p> <p>② <u>재정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u><br/><u>분장한다.</u></p> <p>1. <u>시 행정의 종합기획·정책개</u><br/><u>발·법무·예산의 편성 및 집</u><br/><u>행·투자심사·경영사업·지방</u><br/><u>재정관리시스템운영·의회협</u><br/><u>력·심사분석·성과관리·통계</u><br/><u>에 관한 사항</u></p> <p>2. <u>지방세 전반에 관한 기획·시</u><br/><u>세운영·세외수입·수납관리·</u><br/><u>차량세무 및 체납관리(징수)에</u><br/><u>관한 사항</u></p> |

| 현행  | 개정안  |
|---|--|
| <p><u>· 청사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p>   | <p><u>3. 경리·계약·복식부기·재산관리·청사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p> <p><u>4. 경제·유통·노사협력·가스·에너지에 관한 사항</u></p> <p><u>5. 기업지원·지식산업·산업정책·기술지원·공장설립·무역진흥에 관한 사항</u></p> <p><u>6. 농업행정·축산유통·자연학습·도시원예에 관한 사항</u></p> |
| <p>제9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①</p> <p><u>경제문화국에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문화산업과, 문화예술과, 농산지원과를 둔다.</u></p> <p>② 경제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u>1. 경제·유통·노사협력·가스·에너지에 관한 사항</u></p> <p><u>2. 기업지원·지식산업·산업정책·기술지원·공장설립·무역진흥에 관한 사항</u></p> <p><u>3. 문화산업·만화산업·문화공간조성에 관한 사항</u></p> <p><u>4.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u></p> <p><u>5. 농업행정·축산유통·자연학습·도시원예에 관한 사항</u></p> | <p>〈삭제〉</p>  |
| <p>제10조(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p>  | <p>제10조(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p>   |

| 현행   | 개정안   |
|--|---|
| <p>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 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위생과를 둔다.</p> <p>② (생략)</p> <p>1.~3. (생략)</p> <p>4. <u>체육진흥·체육시설·청소년육성·사회체육에 관한 사항</u></p> <p>5. <u>위생행정·위생지도·위생민원에 관한 사항</u></p> <p>제10조의3(도시국에 두는 과) ① 도시국에 도시계획과, <u>뉴타운개발과, 도시균형개발과, 녹지공원과, 건축과, 시설공사과</u>를 둔다.</p> <p>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u>도시행정·도시계획·입지지원·도시정비·지구단위 및 토지정보에 관한 사항</u></p> <p>2. <u>택지개발·재개발 사업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u></p> <p>3. <u>도시녹화·공원조성·산림환경·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u></p> <p>4. <u>공동주택·일반 건축물 등 건축물의 건축 및 안전에 관한 사항</u></p> <p>5. <u>공용건축물 시설공사·공공건</u></p> | <p>① -----<br/>-----<br/><u>문화산업과, 문화예술과</u>-----.</p> <p>②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4. <u>문화산업·만화산업·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u></p> <p>5. <u>문화예술에 관한 사항</u></p> <p>제10조의3(도시국에 두는 과) ① -----<u>공원녹지과, 건축과, 주택과, 시설공사과, 공공디자인과</u>-----.</p> <p>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u>도시행정·도시계획·입지지원·도시정비·지구단위 및 토지정보에 관한 사항</u></p> <p>2. <u>도시녹화·공원조성·산림환경에 관한 사항</u></p> <p>3. <u>일반 건축물 등의 건축 및 안전에 관한 사항</u></p> <p>4. <u>공동주택 등의 건축 및 안전에 관한 사항</u></p> <p>5. <u>공용건축물 시설공사·공공건축물 신축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u></p> |

| 현행   | 개정안   |
|--|---|
| <p><u>축물 신축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u></p> <p><u>&lt;신 설&gt;</u></p> <p>제11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건설교통국에 <u>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과, 도로과, 도시철도과, 차량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u>를 둔다.</p> <p>1. <u>교통행정·교통지도·운수에 관한 사항</u></p> <p>2. <u>교통시설 및 주차정책·주차시설에 관한 사항</u></p> <p>3. <u>도로행정·도로시설유지·관리 및 도로안전·가로정비·지하공간개발에 관한 사항</u></p> <p>4.~6. (생략)</p> | <p>6. <u>공공디자인·도시디자인·도시경관·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의 디자인·시범가로 조성에 관한 사항</u></p> <p>제10조의4(뉴타운개발국에 두는 과)</p> <p>① <u>뉴타운개발국에 뉴타운개발과, 도시균형개발과, 공영개발과를 둔다.</u></p> <p>② <u>뉴타운개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1. <u>뉴타운지구 및 신·구시가지간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u></p> <p>2. <u>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u></p> <p>3. <u>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채비지에 관한 사항</u></p> <p>제11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u>교통관리과</u>-----</p> <p>-----</p> <p>-<u>재난안전관리과, 도시미관과</u>-.<br/>1. <u>교통행정·운수·화물 등 물류행정 및 주차정책·주차시설에 관한 사항</u></p> <p><u>&lt;삭 제&gt;</u></p> <p>3. -----<br/>-----<u>도로안전</u>-----<br/>-----</p> <p>4.~6.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u>&lt;신설&gt;</u></p> <p>제16조(관장 또는 센터장) 사업소에 <u>관장 또는 센터장</u>을 두며, <u>관장 또는 센터장</u>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p> <p>제17조(소관사무) (생략)</p> <p>1. (생략)</p> <p>가.~다. (생략)</p> <p><u>&lt;신설&gt;</u></p> <p>2. (생략)</p> <p>가.~다. (생략)</p> <p><u>&lt;신설&gt;</u></p> | <p>7. <u>교통지도 및 단속·노점상·야시장·옥외광고물·가로정비 및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u></p> <p>제16조(소장·관장 또는 센터장) -<br/>--<u>소장·관장 또는 센터장</u>---<u>소장·관장 또는 센터장</u>-----<br/>-----<br/>-----.</p> <p>제17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가.~다. (현행과 같음)</p> <p>2. <u>공원관리사업소</u></p> <p>가. <u>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u></p> <p>나. <u>근린공원·도시자연공원·체육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u></p> <p>3. (현행과 같음) (종전의 제2호와 같음)</p> <p>가.~다. (현행과 같음)</p> <p>제19조의2(구에 두는 하부조직) <u>자치구가 아닌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1과(원미구에 한한다), 세무2과(원미구에 한한다), 세무과(소사·오정구에 한한다), 주민생활지원과, 환경녹지과, 건설과를 둔다.</u></p> |



## 〈관계 법령발췌서〉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